

2019학년도 임시 및 제1차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간 사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16시00분
- 장소 : 본교 회의실

● 회순

▶ 임시 및 제1차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안건자문

1.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 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간사(○○○): 12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교장선생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학교장(○○○): 먼저 위원님들의 각자 개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부모 위원부터 각자 개인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의원들이 각자 소개를 하다. (중략)
- 학교장(○○○): 학교장의 인사말씀을 하다.(2019학년도 학교운영 계획 및 중점사항을 설명하면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 학교장(○○○): 먼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제3항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 되었습니다. 조례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시행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용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득표함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투표가 종료 되었습니다. 간사는 득표함을 들고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께서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학교장(○○○): 개표 결과 위원장으로는 ○○○ 지역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는 ○○○ 학부모위원님이 과반수이상 득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본교 교육발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의 당선소감을 듣고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중략)
- 부위원장(○○○):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중략)
- 위원장(○○○):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모두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술부장(○○○):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학생들이 한쪽으로 몰려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미술부장(○○○): 신청학생 인원으로 구분을 해서 강사료를 측정하여 계산이 되고 17명이 넘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으로 강사료를 산정합니다.
- 학부모위원(○○○): 인원이 6명이 안될 경우에는 강의가 폐지가 되나요?
- 미술부장(○○○): 폐지는 되지 않고 대신 강사료의 경우는 최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의견없음.
-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1.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4월~ 7월)

가. 기간 : 2019년 4월 5일 ~ 7월 15일까지

[3학년 보충수업] - 디자인전공 : 2019년 4월 5일 ~ 7월 15일까지

동양화, 서양화, 조소전공 : 2019년 5월 13일 ~ 7월 15일까지

(단위: 원)

전공	수업	수업일수	수업요일	총인원	반수	희망인원	총시간	1인당 수업료
동양화	드로잉	8일	월	20명	1반	11명	32시간(8일×4시간×1인)	207,360
	전공	5일	금		1반	8명	20시간(5일×4시간×1인)	162,000
		4일			1반	8명	16시간(4일×4시간×1인)	129,600
서양화	전공	9일	금	43명	1반	7명	36시간(9일×4시간×1인)	299,940
조소	드로잉	8일	월	17명	1반	7명	32시간(8일×4시간×1인)	266,610
디자인	드로잉	10일	월	43명	1반	9명	40시간(10일×4시간×1인)	288,000
	전공	12일	금		1반	5명	48시간(12일×4시간×1인)	559,880

* 고지액 산출방법 : (신청학생 구간별 강사료 ÷ 신청 학생 수) × 수업시수 × 1.08(수용비)

* 드로잉 :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드로잉 연구반 외 2반

* 전공 : 주제에 따른 수묵채색 연구 및 작품제작 실습반 외 2반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나. 강사료 책정기준

신청학생 수	강사료	
	1, 2학년	3학년
6-7명	48,000 (최저)	54,000 (최저)
8-9명	54,000	60,000
10-11명	60,000	66,000
12-13명	66,000	72,000
14-15명	72,000	78,000 (최고)
16-17명	78,000 (최고)	-

- 위원장(○○○): 두 번째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 미술부장(○○○):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미술실기대회 수상자는 입학시 특혜가 있나요?
- 미술부장(○○○):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의사봉3타)

▣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 ▣

● 행사계획

-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월간 아트앤디자인 홈페이지(www.artndesign.com)
- 나. 접수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4월 26일(금) 17:00
- 다. 행사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09:00-13:00
(지도교사 및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 벽강예술관 10:00)
- 라. 장소 : 계원예술고등학교 교내
- 마. 징수계획

대회명	참가자격	참가비	비고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중학생 (1,2,3학년)	20,000원	약600명 예상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위원장(○○○): 세 번째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 영양사(○○○): 소위원회(급식) 구성(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행정실(○○○): 소위원회(예·결산) 구성(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의사봉3타)

▣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 ▣

1. 급식 소위원회

1) 2019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안)

=> 학교운영위원 : 1명(소위원장 포함), 학부모위원 : 10명, 교직원 2명

구분	직	이름	재학생자녀	비고
위원장	학교운영위원		고등학교 3학년	
부위원장	학부모(중학교)		중학교 2학년	
위원	학부모		2학년 미술과	
	학부모		2학년 음악과	
	학부모		2학년 무용과	
	학부모		2학년 연영과	
	학부모		1학년 미술과	
	학부모		1학년 음악과	
	학부모		1학년 무용과	
	학부모		1학년 연영과	
	학부모(중학교)		중학교 1학년	
		교감		
	행정실직원			중학교
간사	영양사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안)

제1조 (목적) 이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규정에 따라 계원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 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은 계원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급식운영 방식의 결정
- ② 식재료 검수, 조리실 위생점검, 배식과정 모니터링
- ③ 급식비 책정에 관한 사항
- ④ 식재료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기 및 현장방문
- ⑤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 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 1. 교직원
 - 2. 학부모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되는 사유로 당해 연도 4월 5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등)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예·결산 소위원회

가. 2019년도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

=> 학부모운영위원: 1명, 부장교사: 5명, 행정실장: 1명, 간사: 1명

구분	직	이름	비고
위원장	교감	○○○	
위원	학부모위원	○○○	운영위원
	행정실장	○○○	
	교무총괄부장	장미경	
	미술부장	○○○	
	음악부장	김영숙	
	무용부장	최혜정	
	연극영화부장	이형철	
간사	예산 담당 주무관	제옥선	

예·결산 소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따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계원예술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제2조(기능) ①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2.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계획 수립의 심의 관련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 교감
 3. 각 부서 부장
 4. 행정실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예결산소위원회위원장은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의사봉3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제1조【목적】 본회는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계원학원 정관」에 의거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계원학원 정관」에 의거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05.)
제2조【명칭】 본회는 계원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하고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회는 계원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설치한다.(2019.04.05.)
제3조【역할】 본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 3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2019.04.05.)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p>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제5조【위원 정수】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학교장 포함)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본위원회는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조의 1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p>	<p>제 4 조(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2019.04.05.)</p> <p>제4조의 1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2019.04.05.)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2019.04.05.) ③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2019.04.05.) ④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2019.04.05.)</p>
<신설>		
삭제	제5조 (삭제 2019.04.05.)	제5조 (삭제 2019.04.05.)
<p>제6조【위원의 선출 및 방법】 1.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과별(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영화과)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미술과 2명, 음악과 2명, 무용과 1명, 연극영화과 1명) 2.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은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9. <신설></p>	<p>제6조(위원의 선출) ① (현행과 동일)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하여 선출한다. 추천자 수가 교원위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은 교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잔여위원을 위촉한다. ③ (삭제 2019.04.05.) ④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과별(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영화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미술과 2명, 음악과 2명, 무용과 1명, 연극영화과 1명)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추천자 수가 교원위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은 교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잔여위원을 위촉한다.(2019.04.05.) ③ (삭제 2019.04.05.) ④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019.04.05.)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2019.04.05.) ⑦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9.04.05.) ⑧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2019.04.05.)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2019.04.05.)</p>
<신설>	<p>제6조의 1 (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p>	<p>제6조의 1(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2019.04.05.)</p>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p>제 7 조 【위원의 임기】 1. <u>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2. <u>임기 중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7조 (위원의 임기) ①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u>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u> ③ <u>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의 1 (보궐선거) ① <u>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0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u> ② <u>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9.04.05.)</u> ②<u>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2019.04.05.)</u> ③ <u>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9.04.05.)</u></p> <p>제7조의 1(보궐선거) ① <u>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0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9.04.05.)</u> ② <u>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19.04.05.)</u></p>
<p>제 8 조 【위원의 자격】 1. <u>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9.03.01. 개정)</u> 2. <u>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u> 3. <u>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u></p>	<p>제8조(위원의 자격) ① ~ ③ (현행과 동일)</p>	<p>제8조(위원의 자격) ① <u>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② <u>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u> ③ <u>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u></p>
<p>제 9 조 【위원의 의무】 1. <u>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2. <u>위원은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u> 3. <u>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u> 4.<신설 (2019.04.05.)></p>	<p>제9조(위원의 의무) ① <u>위원은 ----- 아니한다.</u>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u>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아니 된다.</u></p>	<p>제9조(위원의 의무) ① <u>위원은 무보수 봉사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9.04.05.)</u> ② <u>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u> ③ <u>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아니 된다. (2019.04.05.)</u></p>
<p>제 10 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u>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하는 경우</u> 2. <u>교원위원은 퇴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u> 3. <u>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u>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p>	<p>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 결로서 결정한다. ① -----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③ (현행과 동일) ④ <u>위원이 제8조(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u> ⑤ <u>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u> ⑥ <u>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u> ⑦ <u>「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u></p>	<p>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2019.04.05.) ① <u>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019.04.05.)</u> ② <u>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019.04.05.)</u> ③ <u>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u> ④ <u>위원이 제5조(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019.04.05.)</u> ⑤ <u>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019.04.05.)</u> ⑥ <u>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019.04.05.)</u> ⑦ <u>「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2019.04.05.)</u></p>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p>제 11 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 직원】</p> <p>1. 본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 명을 둔다.</p> <p>2.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임기는 1년이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p> <p>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4.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p> <p>5. <신설></p> <p>6. <신설></p> <p>7. <신설></p> <p>8. <신설></p>	<p>제11조(위원장 · 부위원장)</p> <p>① (삭제 2019.04.05.)</p> <p>② _____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p> <p>③ _____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04.05. 개정)</p> <p>④ 삭제</p> <p>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⑥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1조(위원장 · 부위원장)</p> <p>① (삭제 2019.04.05.)</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2019.04.05.)</p> <p>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04.05.)</p> <p>④ (삭제 2019.04.05.)</p> <p>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9.04.05.)</p> <p>⑥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19.04.05.)</p> <p>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9.04.05.)</p>
<p><신설></p>	<p>제11조의 1 (간사)</p> <p>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1조의 1(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 12 조 【대의위원회】 본 위원회 산하 단체로 학부모를 회원으로 하는 대의위원회를 둔다.</p>	<p>제 12 조(삭제 2019.04.05.)</p>	<p>제 12 조(삭제 2019.04.05.)</p>
<p>제 13 조 【심의 사항】</p> <p>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한다.</p> <p>(1)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p> <p>(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p> <p>(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훈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특정 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p> <p>(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p> <p>(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6)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p> <p>(7)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p> <p>(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p> <p>(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16) 신설</p> <p>2.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며,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p> <p>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p>	<p>제13조(자문사항 등)</p> <p>① 본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학교의 예산과 결산</p> <p>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p> <p>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p> <p>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p> <p>5. 학교법인 개방위원의 추천</p> <p>6. 학교안전계획의 수립</p> <p>② (삭제 2019.04.05.)</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p>	<p>제13조(자문사항 등)</p> <p>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019.04.05.)</p> <p>1.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 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p> <p>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p> <p>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훈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특정 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p> <p>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p> <p>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6.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p> <p>7.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p> <p>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p> <p>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p> <p>11. 학교의 예산과 결산(2019.04.05.)</p> <p>1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2019.04.05.)</p> <p>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2019.04.05.)</p> <p>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019.04.05.)</p> <p>15. 학교법인 개방위원의 추천 (2019.04.05.)</p> <p>16. 학교안전계획의 수립(2019.04.05.)</p> <p>② (삭제 2019.04.05.)</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p> <p>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2019.04.05.)</p>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p align="center"><신설></p>	<p>제13조의 1(서류제출 요구)</p> <p>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p>	<p>제13조의 1(서류제출 요구)</p> <p>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9.04.05.)</p> <p>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2019.04.05.)</p> <p>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2019.04.05.)</p>
<p>제 14 조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p> <p>1.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p> <p>2.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3.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토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p> <p>4.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4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p> <p>(①~④ 현행과 동일)</p>	<p>제14조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p> <p>①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p> <p>②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③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토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p> <p>④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p>
<p>제 15 조 【회의 및 회의 소집】</p> <p>본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까지로 한다.</p> <p>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p> <p>2.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구시 부위원장이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p>3.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초과할 수 없다.</p> <p>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5. <신설></p>	<p>제15조(회의소집)</p> <p>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9.04.05. 개정)</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삭제 2019.04.05.)</p> <p>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p>	<p>제15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019.04.05.)</p> <p>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p> <p>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9.04.05.)</p> <p>③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삭제 2019.04.05.)</p> <p>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 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2019.04.05.)</p>
<p>제 16 조 【회의운영 등】</p> <p>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2.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3.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 16 조(회의운영 등) (현행과 동일)</p>	<p>제 16 조 【회의운영 등】</p> <p>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2.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3.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 17 조 【산하단체】</p> <p>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7조(산하단체) (현행과 동일)</p>	<p>제 17 조 【산하단체】</p> <p>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 18 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의 공개】</p> <p>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p> <p>3. 위원회는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p> <p>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2019.04.05. 개정)</p> <p>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19.04.05. 개정)</p> <p>③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2(間)서명하게 할 수 있다.(2019.04.05.)</p>	<p>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p> <p>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2019.04.05.)</p> <p>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19.04.05.)</p> <p>③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2(間)서명하게 할 수 있다.(2019.04.05.)</p>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신설>	제 18조의 1(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의 1(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04.05.)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04.05.)
<신설>	제 18조의 2(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의 2(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04.05.)
제 19 조 【운영 경비】 본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_____	제 19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2019.04.05.)
-대위원회-		
제 20 조 【구성】 대의위원회는 학급별 학부모 총회에서 학급별로 5명의 범위 내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20조 (삭제 2019.04.05.)	제20조 (삭제 2019.04.05.)
제 21 조 【기능】 대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의견수렴 및 자문, 기타) 2.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	제21조 (삭제 2019.04.05.)	제21조 (삭제 2019.04.05.)
제 22 조 【임원】 대의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4명(각 과별 1명), 총무 1명을 둔다.	제22조 (삭제 2019.04.05.)	제22조 (삭제 2019.04.05.)
<신설>	제2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19.04.05.)
<신설>	제25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9.04.05.)
<신설>	제26조(소위원회) 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 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2019.04.05.) ② 소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019.04.0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9.04.05.)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2019.04.05.) ⑤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9.04.05.)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문
<신설>	제27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자문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자문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04.05.)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자문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자문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04.05.)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문하여야 한다.(2019.04.05.)
<신설>	제28조(학생대표를 통한 안전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전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8조(학생대표를 통한 안전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04.05.) ②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2019.04.05.) ③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9.04.05.)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전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2019.04.05.)
<신설>	제2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2019.04.05.)
<신설>	제3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2019.04.05.)

- 위원장(○○○): 다섯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구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간(間)서명 선정위원	○○○ (학생생활인권부)	○○○ (미술과 2학년 학부모)	○○○ (음악과 2학년 학부모)

- 위원장(○○○): 이상으로 5건의 안건 심의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건의사항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이상으로 제1차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 11명
 - 학부모위원 : ○○○, ○○○, ○○○, ○○○, ○○○, ○○○
 - 교원위원 : ○○○, ○○○, ○○○, ○○○
 - 지역위원 : ○○○
- 참석 교직원 : 교감 ○○○, 행정실장 ○○○, 미술부장 ○○○, 영양사 ○○○

기록자 : 간사 ○ ○ ○ (인)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2019학년도 임시 및 제1차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간사	위원장	학교장

- 개최일시 : 2019. 04. 05.(금) 16:00
- 개최장소 : 회의실
- 참석인원 : 11/12 (참석수/정수)

▶ 임시 및 제1차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안건자문

1.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 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안건자문

1.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미술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
2. 제26회 전국 중학생 미술실기 대회 운영 및 징수계획(안)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미술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전국중학교 실기대회 운영 계획
3.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영양사 ○○○, 행정실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소위원회 구성(안)
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간서명자 선정

- 보고사항
“해당 없음”

▶ 회의록 첨부

위의 자문 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간사 : ○ ○ ○ (인)